

보호자(수급자) 노인학대교육자료

【노인 인권보호 지침】

제1조 (노인 권리보호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노인복지 시설에

생활하는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하는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항 어르신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항 개인적 욕구에 상응 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제3항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제4항 시설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항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있다.

제6항 우편,전화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

제7항 정치,문화,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8항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하는 권리가 있다.

제9항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항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항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조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노인학대의 유형을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와 제39조의 9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요양원의 직원은 학대의 유형을 숙지하여 주의하여야한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제3조 (노인학대예방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제1항 어르신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기 위하여

1. 어떠한 노동행위를 시켜서는 안 되며
2.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3. 시민으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차별 받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또한 감금, 강압, 보복, 그리고 제2조에서 밝힌 여섯 가지 유형의 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2항 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 잔존능력이 유지 되도록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고
2. 정기적인 상담으로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며
3. 선호 음식과 신체 상태를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4. 처방에 따른 약물을 이유 없이 금지하지 않는다.
5.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직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6.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제3항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1. 거주공간을 청결히 하고
2. 개별적인 수납공간이 있으며
3. 비품을 깨끗하게 위생 관리한다.
4. 적절한 조명과 음향으로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며
5.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제4항 어르신을 이유 없이 신체를 구속 하지 않기 위하여

1.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위협하는 절박성
2.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는 비대체성
3. 긴급하여 어쩔 수 없이 구속하게 되는 일시성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 하여서는 안된다.
4. 절박성과 비대체성, 일시성에 의하여 구속하게 되더라도 대상자의 심신 상황, 구속한 시간, 구속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에게 먼저 동의 후에 실시하며, 이를 가족에게 알려야한다.
5. 의료적인 목적을 제외한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제5항 어르신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1.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비밀로 하여야 하며,
2.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에 관련된 사생활 및 사진은 사전 동의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안된다.
3. 인지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정보를 개방 하여야 한다.

제6항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1.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2. 우편물의 발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수신한 우편물은 동의 없이 개봉 하여서는 안 된다.

제7항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한 이념을 강요하거나 투표와 같은 권리행사에

압력을 행사 하여서는 안 된다.

제8항 종교적 신념을 보장 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생활해온 생활양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10항 개인 물품을 자율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1. 수납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2. 위탁받아 관리하는 금전과 물품은 수시로 사용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항 불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1. 불평을 표현할 수 있는 건의함을 비치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며
2. 문제를 해결 하고자 노력하고
3. 불평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항 시설 내·외부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항 자신의 의사결정은 자신과 가족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 건강을 유지 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 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제4조 (노인학대 대응방법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제1항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는 129번, 1577-1389번이다.

제3항 어르신 학대 접수방법은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2.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여부를 밝히며
3. 신고목적인 1)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2)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3)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 조사에 대한 욕구를 알리고
4. 피해노인과 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5. 학대의 정확한 내용인 1)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2)발생빈도 3)지속성 4)학대방법 5)학대유형은 말한다.
6. 피해 어르신의 현재 상황인 1)어르신의 위기상황 평가 2)긴급분리보호 여부 3)현재 보호 되고 있는 곳 4)심신상태 5)가정환경 등을 알린다.

